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의결년월일 : 2009. 05. .

1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,
- 새마을운동조직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·재정적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지원근거 및 범위 명시
 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- 지원근거와 범위 명시(안 제3조)
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의 교부 등)에 따라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명시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관계부서협조 : 규제여부 사전심사, 부패영향평가
- 마. 입법예고 : 2009.03.10 ~ 04.13(22일간)실시, 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평창군새마을회,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, 평창군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평창군지부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평창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읍·면협의회 및 읍·면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, 평창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,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, 기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신청)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의거,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,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,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 및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■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

제3조 (출연금의 교부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